

Samil Commentary

Korean Tax Update



December 17, 2018

2018년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년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실적

최신 세무 예규 판례

2018년 12월 8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은 세수가 2.7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3.3조원이 감소하여 향후 5년간 총 세수 감소효과는 6조원임. 증가 요인은 종합부동산세 서울 인상(+0.3조원) 등이며, 감소 요인은 지방소비세 확대($\triangle 3.3$ 조원) 등으로 인함.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임.

정부가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행시기 유예

현 행(정부안 없음)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 (시행시기) 2019.1.1. 이후 양도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25% 세율 적용 시행시기 1년 유예 ○ (좌 동) (시행시기) 2020.1.1. 이후 양도분

< 수정이유 >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함.



사회적기업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수준 조정

정부안	개정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의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의 10% → 30% 	<input type="checkbox"/> 손금산입한도율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 수정이유 > 일반 기업과의 형평성 감안

영세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의무 적용 배제

현행(정부안 없음)	개정
<input type="checkbox"/> 중간예납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 ① 또는 ②의 방법 중 선택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간예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② 중간예납기간(1~6월)을 중간결산 ○ (대상) 다음의 법인을 제외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학교법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input type="checkbox"/> 중간예납 적용 대상에서 영세 중소기업 제외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 margin-left: 2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①의 방법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 수정이유 > 영세 중소기업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 시행시기 > '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지방소비세 확대

현행(정부안 없음)	개정
<input type="checkbox"/> 지방소비세 <p>기준세액 :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 공제·감면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 89% - 지방소비세 : 11% 	<input type="checkbox"/> 지방소비세 확대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 85% - 지방소비세 : 15%

< 수정이유 > 지방 자주재원 확충

< 시행시기 > '19.1.1. 이후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설비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정부 안		개정																																	
<input type="checkbox"/> 특정 설비 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조정 <input type="radio"/> (공제율 조정)		<input type="checkbox"/> 안전·환경·근로자복지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인상 <input type="radio"/> (공제율 인상)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제시설</th> <th>공제율 (대·중견·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안전설비 등</td> <td>1·3·7 → 1·3·10</td> </tr> <tr> <td>환경보전시설</td> <td>1·3·10</td> </tr> <tr> <td>근로자복지증진시설</td> <td>7·7·10 → 1·3·10</td> </tr> <tr> <td>R&D설비</td> <td>1·3·6 → 1·3·7</td> </tr> <tr> <td>생산성향상시설</td> <td>1·3·7</td> </tr> <tr> <td>에너지절약시설</td> <td>1·3·6 → 1·3·7</td> </tr> <tr> <td>직장어린이집</td> <td>10·10·10</td> </tr> </tbody> </table>		공제시설	공제율 (대·중견·중소,%)	안전설비 등	1·3·7 → 1·3·10	환경보전시설	1·3·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7·7·10 → 1·3·10	R&D설비	1·3·6 → 1·3·7	생산성향상시설	1·3·7	에너지절약시설	1·3·6 → 1·3·7	직장어린이집	10·10·10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제시설</th> <th>공제율 (대·중견·중소,%)</th> </tr> </thead> <tbody> <tr> <td>안전설비 등</td> <td>1·5·10</td> </tr> <tr> <td>환경보전시설</td> <td>3·5·10</td> </tr> <tr> <td>근로자복지증진시설</td> <td></td> </tr> <tr> <td>R&D설비</td> <td></td> </tr> <tr> <td>생산성향상시설</td> <td></td> </tr> <tr> <td>에너지절약시설</td> <td></td> </tr> <tr> <td>직장어린이집</td> <td></td> </tr> </tbody> </table>		공제시설	공제율 (대·중견·중소,%)	안전설비 등	1·5·10	환경보전시설	3·5·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R&D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직장어린이집	
공제시설	공제율 (대·중견·중소,%)																																		
안전설비 등	1·3·7 → 1·3·10																																		
환경보전시설	1·3·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7·7·10 → 1·3·10																																		
R&D설비	1·3·6 → 1·3·7																																		
생산성향상시설	1·3·7																																		
에너지절약시설	1·3·6 → 1·3·7																																		
직장어린이집	10·10·10																																		
공제시설	공제율 (대·중견·중소,%)																																		
안전설비 등	1·5·10																																		
환경보전시설	3·5·10																																		
근로자복지증진시설																																			
R&D설비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직장어린이집																																			

< 수정이유 > 안전·환경·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 촉진

위기지역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정부 안		개정	
<input type="checkbox"/>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 시 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input type="radio"/> (공제율) 중소 3% → 7% 중견 1~2% → 3%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021.12.31		<input type="checkbox"/> 위기지역 투자시 공제율 상향 <input type="radio"/> (공제율) 중소 3% → 10% 중견 1~2% → 5% <input type="radio"/> (좌 동)	

< 수정이유 > 위기지역의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신설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 신 설 >	<input type="checkbox"/>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input type="radio"/> (적용대상)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시설에 투자한 금액 <input type="radio"/> (적용지역) 수도권과 밀양제권역 외 <input type="radio"/> (공제율) 2% + 최대 1%*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율 × 1/5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020.12.31

< 수정이유 > 5세대 이동통신 투자 활성화 지원

< 시행시기 > 201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국외사업자의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정부안	개정
<input type="checkbox"/> 국외사업자가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음성·동영상파일· 전자문서·소프트웨어 등 저작물 ○ 클라우드 컴퓨팅 <p><추 가></p> <p><추 가></p>	<input type="checkbox"/> 전자적 용역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input type="checkbox"/>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용역

< 수정이유 >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가속상각 적용 대상 투자자산 범위 조정

정부안	개정
<input type="checkbox"/>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내용) 가속상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시행령 규정) ○ (대상자산) 혁신성장 투자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설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 (취득기간) 2018.7.1.~ 2019.12.31 	<input type="checkbox"/> 중소·중견기업의 가속상각 대상자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input type="checkbox"/> ○ (대상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중견기업: 일반 사업용 자산 - 대기업: 혁신성장 투자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현 행(정부안 없음)	개정
<input type="checkbox"/>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영위 모든 기업 - 당해 제3자 물류 이용비율 30% 이상 - 전년 대비 제3자 물류비용 증가 ○ (공제액) 전년 대비 제3자물류비용 증가액의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5%) 세액공제 ○ (적용기한) 2018.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대상에서 대기업 제외 - 제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input type="checkbox"/>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020.12.31

< 수정이유 > 중소·중견기업 제3자 물류비용 지원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복귀 시 세액감면 확대

정부 안	개정
<p><input type="checkbox"/> 해외진출기업 국내 부분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해외사업장 축소·유지 후 국내사업장 신설 ○ (대상) 중소·중견기업 → 모든 기업 ○ (감면율) 3년간 100%, 2년간 50% ○ (적용기한) 2021.12.31.</p>	<p><input type="checkbox"/> 비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기업 감면확대 ○ (좌 동) ○ (감면율)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차등 - (비수도권) 5년간 100%, 2년간 50% - (수도권*) 3년간 100%, 2년간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좌 동)</p>

< 수정이유 > 해외진출기업 국내유턴 촉진 및 지방 경제 활성화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 등

정부 안	개정
<p><input type="checkbox"/> 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의 관세감면 ○ (감면대상) 중소. 중견기업 ○ (감면한도) ① 완전복귀 : 한도 4억원 ② 부분복귀 : 한도 2억원 ○ (적용기한) 2021.12.31.</p>	<p><input type="checkbox"/> 대상확대, 감면한도 폐지 및 적용기한 연장 ○ (감면대상) 대기업 포함 (중소. 중견. 대기업) ○ (감면한도) - 한도 폐지 ○ (좌 동)</p>

< 시행시기 > 2019.1.1.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 철회

정부 안	개정
<p><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과정에 대해 납세자와 조사공무원의 녹음규정 명문화</p>	<p>< 삭제 ></p>

< 부대의견 > 정부는 조사공무원의 권한남용 행위가 조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세무조사 과정의 녹음규정 도입 시 예상되는 장·단점 등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에 2019년 상반기에 보고할 것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과세기준금액 조정

정부안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인지세 비과세되는 상품권의 범위<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은 과세○ (시행시기) 2019.7.1. 이후 발행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모바일 상품권 과세기준금액 상향-<ul style="list-style-type: none">- 1만원 초과 → 3만원 초과○ (시행시기) 2020.1.1. 이후 발행분

< 수정이유 > 종이상품권과의 형평성 및 영세발행업체의 세부담 고려

업무실적 내역서 작성 및 제출의무 신설

현행(정부안 없음)	개정
<p>< 신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세무사·공인회계사의 업무실적 작성 및 제출<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무사·공인회계사는 전년도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복청구, 세무조사 대리 등 업무 성격에 따라 구분 및 수임액·건수, 공직퇴임세무사 여부 기록○ 매년 1월말까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

< 수정이유 > 세무사 등의 세무대리 업무 투명성 제고

< 시행시기 > 2019.7.1. 이후 최초로 처리한 업무실적 분부터 적용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실적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11월 27일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가 230.4억 달러(잠정)로 기존 최대 실적인 229.4억 달러(2017.12.31)를 넘어섰다고 밝힘. 연도별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5) 209.1억 달러 → (2016) 212.9억 달러 → (2017) 229.4억 달러 → (2018.11.27) 230.4억 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국가별로는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발 투자가 증가, 업종별로는 기계장비·의료정밀, 운송용 기계 등 제조업과 유통, 정보통신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함.

역대 최대 실적 간접을 달성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다음과 같음.

- **한국경제의 긍정적 투자환경 지속:** 남북·북미간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역대 최고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반도체·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활황 등
- **증액투자 활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 분야에서 소재·부품을 중심으로 국내 대기업과 협력하여 전·후방 연관산업 수요증대에 대응하기 위함.
- **전략적 투자:** 바이오, 디지털콘텐츠, 모바일금융, 전자상거래 등 본격적인 4차

-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투자가 확대
- **장기적인 기대감**: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여건과 기반 활용,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 도입에 따른 신기술·제품의 테스트베드 가능성 등
 - **외국인투자 감면제도 폐지**: 2018년 말까지 투자분에 대해서만 외국인투자 감면이 허용되므로 계획한 투자를 조기에 실행한 효과.

최신 세무예규판례

[국패]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의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 실질귀속자 판단기준

이번 사건의 쟁점은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수취하던 네덜란드법인이 원천세가 면제되는 형가리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용료소득을 수취하도록 한 경우 형가리법인이 아닌 네덜란드법인을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로 보아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임.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쟁점 형가리법인은 계약 관련 업무 수행 내역, 그에 따른 사용료의 수령, 관련 비용 지출과 자금 운용 내역을 비롯한 사용 · 수익 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형가리 내 사업 연혁, 장기간의 활발한 사업활동, 인적 · 물적 설비, 사용료소득의 지배 · 관리 · 처분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충분한 실체를 갖춘 법인으로서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에 의해서도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 승소 취지로 한 · 형가리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대법2017두33008, 2018. 11. 15.)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는 당해 사용료소득을 지급 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 등이 없는 사용 · 수익권을 갖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하면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에 대하여 최초로 제시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인용] 주식 취득 후 피합병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 취득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그 법인에 피합병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주식 취득 후 별도의 사업활동 없이 단기간 내 폐업(흡수합병)한 경우 해당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사건의 쟁점임.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상 과세사업자인 점,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았으므로 동 자문용역 등은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합병법인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들면서 주식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함. (조심2018서1942, 2018. 10. 16.)

이번 심판례는 주식 등과 관련된 비용일지라도 비용의 지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본 기준 판결 및 심판례와 동일한 입장으로 단기간 내 폐업함에 따라 별도의 사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국제조세 이중현 709-0598 alexlee@samil.com	내국세 오연관 709-0342 ygoh@samil.com	이전가격 & 국제통상 이희태 3781-9083 htlee@samil.com	비영리법인지원센터 변영선 3781-9684 youngspyun@samil.com
이상도 709-0288 sdlee@samil.com	이영신 709-4756 yslee@samil.com	헨리 안 3781-2594 henryan@samil.com	중소기업·스타트업지원센터 김봉균 3781-9975 bkyoonkim@samil.com
김상운 709-0789 swkim@samil.com	김진호 709-0661 jhokim@samil.com	전원엽 3781-2599 wychon@samil.com	Knowledge Innovation Center 조한철 3781-2577 hccho@samil.com
김주덕 709-0707 michaelkim@samil.com	황철진 709-0759 hcj@samil.com	조정환 709-8895 jhwando@samil.com	삼일인포마인 송상근 709-0559 sksong@samil.com
이동복 707-4768 dongblee@samil.com	정복석 709-0914 bsjung@samil.com	M&A 세무 정민수 709-0638 minsjung@samil.com	파티클유씨 관세법인 이영모 3781-3140 youngmo.lee@kr.pwc.com
정종만 709-4767 cmchung@samil.com	남형석 709-0382 hyungnam@samil.com	최혜원 709-0990 hwnchoi@samil.com	
신현창 709-7904 hcshin@samil.com	남동진 709-0656 djnam@samil.com	해외파견세무 박진아 709-0797 japark@samil.com	
조창호 3781-3264 changhojosamil.com	나승도 709-4068 sdna@samil.com	상속증여&주식변동 이현종 709-6459 hyunjonglee@samil.com	
오남교 709-4754 ngoh@samil.com	노영석 709-0877 ysnoh@samil.com	금융세무 박태진 709-8833 tjpark@samil.com	
차일규 3781-3173 igcha@samil.com	정선흥 709-0937 shejung@samil.com	정훈 709-3383 hoonjung@samil.com	
김광수 709-4055 kskim1@samil.com	조성욱 709-8184 sungwcho@samil.com	박수연 709-4088 sooypark@samil.com	
김영옥 709-7902 yokim3@samil.com	신윤섭 709-0906 ysupshin@samil.com		
로버트브로웰 709-8896 robert.browell@samil.com	최유철 3781-9202 ycchoi@samil.com		

본 자료의 내용은 고객에게 관심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법 및 관계 법령 관련 영향이나 적용은 관련된 특정 사실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삼일회계법인의 상기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18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